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25호]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264호 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504호 전부개정 2019. 7. 26 조례 제875호

-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및 제18조의 6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은 별표 1과 같다.
- **제3조(장려수당)**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를 전담하 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2와 같다.
- 제4조(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)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(소재지가 증평 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는 별표 3과 같다.

부칙(2019. 7. 26 조례 제875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[별표 1]

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	보건진료직렬 공무원
월 지급액	995,000원	914,000원	250,000원

□ 비 고

-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을 말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·치과의 사·한의사를 말한다.
- 보건진료직렬 공무원(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은 「농어 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의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
[별표 2]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

지 급 대 상	월 지급액
분뇨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하는 사람	150,000원
하수 및 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하는 사람	120,000원
시체화장업무 및 공원묘지·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	180,000원

※ 장려수당 지급대상 근무시설은 위생처리장, 하수처리장, 쓰레기처리장, 화장 장, 화장장관리사무소 등을 말함 [별표 3]

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

지 급 대 상	월 지급액
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(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)	300,000원